태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　　정　2011.07.01.
1차 개정　2014.09.12.
2차 개정　2015.07.31.
3차 개정　2016.08.31.
4차 개정　2018.09.19.
5차 개정　2019.10.18.
6차 개정　2023.03.01.
7차 개정　2023.12.20.
8차 개정　2024.09.26.
9차 개정　2026.07.0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태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학생이 행동과 결정에 스스로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8조,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제40조의3제3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 상 필요한 학생생활지도,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성】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부모 등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6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인권부장이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학생선도 사항 심의
4. 간　　사: 회의록 작성 및 기록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특성상 학교인권 담당교사가 맡는다.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③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운영한다.
-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

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또는 회피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학생의 선도

제14조 【선도사항】 학생선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여 교육목적상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
2. 법령을 위반하여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3. 학생의 학습권 보장, 건강권 보호, 안전 확보, 교내·외에서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제15조【징계의 종류】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6조【선도의 방법】 학생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4. 학급담임과 동학년 교사, 생활인권교육부가 협조하여 지도한다.

※ 학교 내의 봉사의 예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 보조
3) 교내도서관 도서 정비	4) 마음 고르기 프로그램(인성관련 도서읽기, 편지쓰기)
5) 학습준비물실 등 자료 정비	6) 교내 캠페인 활동
7) 명심보감 쓰기 등	

②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 사회봉사의 예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 등은 학생 및 보호자와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4.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 담당자는 해당 학생의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한다.

제17조【선도의 기준】 학생 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 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6	정당한 사유없이 미인정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8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평가를 거부한 학생	○	○	○	
9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10	평가문제를 절취하거나 대리평가에 관여한 학생	○	○		
11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1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
1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14	흉기, 위험물이나 폭발물** 등을 휴대한 학생	○	○		
15	정당한 사유없이 미인정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16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17	본드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18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19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0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1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22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상습적**'이란 3회 이상 같은 행동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함

* *'**흉기, 위험물이나 폭발물**'이란 비비탄, 당근칼 등 흉기 모양이 장난감, 레이저, 화약총 등 다칠 위험이 있는 장난감이나 실제 물건을 모두 통칭하여 의미함

제3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18조【사안 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위원회 개최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심의 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8.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심의 결과의 학교장 결재로 확정・처리

제20조【결과 처리・통지・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대장 및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등 공개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학교장의 허락 하에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② 학생 선도 조치 결과 및 재심의 신청 등 유의사항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선도 결과 및 징계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선도학생의 행사 및 평가 참여】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및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평가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2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①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재심의 신청과 절차】

①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 사유 등이 명시된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③ 학교장은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 절차는 심의 절차의 규정에 따른다.

⑤ 재심의는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제24조【행정심판 및 소송】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생활지도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24조 【학생생활지도】

①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는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를 추구한다.

② 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건강한 생활태도를 위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호자를 포함한 가정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5조【학업 및 진로】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 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2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2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2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 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2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교원 근무 시간(08:40~16:40) 외의 상담

⑦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31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2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3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제32조 1【교육활동 중 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②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에 따른 요건, 분리 기간과 장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구분</th><th>조치</th><th colspan="3">분리 장소 및 시간</th><th>요건</th><th>절차 및 유의점</th><th>학습지원</th></tr>
<tr><td rowspan="3">수업 시간 중</td><td>1호 지도</td><td rowspan="2">교실 내</td><td>다른 좌석</td><td>해당 수업중</td><td rowspan="2">○교사가 2회 이상 명확한 조언, 주의 등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② 고성을 지르거나
③ 교실을 돌아다니는 등
수업방해행동이 반복되는 경우</td><td rowspan="2">교사의 교육적 판단
→ 지정 좌석 또는 위치로 이동 지시
※ 실외 수업 :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td><td rowspan="2">해당 좌석/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로 수업 참여</td></tr>
<tr><td>2호 지도</td><td>지정된 위치</td><td>해당 수업중</td></tr>
<tr><td>3호 지도</td><td>교실 밖</td><td>지정된 장소</td><td>해당 수업 종료시까지</td><td>○교사의 정당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① 과도한 흥분상태가 지속되거나
② 타 학생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거나
③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위협적인 수업방해행동이 발생한 경우</td><td>교사의 교육적 판단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교직원이 인계하여 지정 장소 이동
→학부모 문자 통지</td><td>자기성찰문, 학습지 등 과제 수행</td></tr>
<tr><td>기타</td><td colspan="7">○ 1호, 2호의 경우, 지도 후 해당 수업 시간 내 교사의 판단에 따라 원자리 복귀 조치함
○ 3호의 경우, 지원교사가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의 과제 수행 활동을 지원함
○ 3호의 경우, 교감(장)은 해당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지원교사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일지를 작성함</td></tr>
</table>

③ 학교의 장은 3호 지도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원은 제3호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 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담임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⑧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3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29조에 따른 조언, 30조에 따른 상담, 3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3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 그 사유와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3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절 기타 생활지도

제3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 담임교사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6조【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 등 학생선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38조【기본품행】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39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학생안전생활】
① 학생의 등교 시간 이후 외부인의 교문 출입을 제한한다.
② 학교안전지킴이는 등하교 지도 및 수시로 학교 주변을 순회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시로 교내를 순회하여 학생 안전생활에 기여한다.

제41조【양성평등교육】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2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43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1인 1역할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44조【소지 금지 물품】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1. 흉기 또는 흉기 모양의 장난감 등 사람의 신체 · 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성 물질 및 전열기
3. 도박 및 사행성을 조장하는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품
5.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6. 술, 담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제45조【소지 금지 물품 검사의 절차 등】

① 학생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인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② 학생이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 · 이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다만, 학생이 흉기 및 흉기 모양 장난감 등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로부터 학생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지품 검사는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 · 이유 · 절차 · 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⑥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부장교사 등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소지 물품 분리보관】

① 수업을 방해하는 물품을 2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따라 이를 분리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은 수업 종료 이후 또는 당일 하교시 반환한다.

② 제44조에 따른 소지 금지 물품의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즉각 분리 보관하며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직접 반환한다. 다만,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폐기 처분한다.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 및 반환방법
1	교사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수업 방해 물품**	당일 학생에게 반환	교실 내 지정 장소	○1회차 : 주의 실시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당일 내 반환 : 수업 종료 또는 하교시
2	제44조 ①항부터 ⑥항에 해당하는 **소지 금지 물품**	보호자에게 직접 반환	교무실 등 지정장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폐기 조치

제47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2.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교내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4. 실외 교육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5. 기타 학생의 안전과 관련있는 활동을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48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3.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4.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5. 술, 담배, 본드 등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 등 유해성 약물 복용을 금한다.
6.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49조【보호자의 의무】

① 보호자는 학생(자녀)이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가정에서 교육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학생(자녀)가 교내외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50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금하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51조【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교는 학생의 스마트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스마트기기 관리 및 분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 스마트기기를 소지하고 등교한 경우, 등교하면서 전원을 끄고 하교한 이후에 전원을 켜도록 하며,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3. 수업시간 중 스마트기기 등의 사용은 교육활동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다.
4.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스마트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으며 방과 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이를 돌려준다.
5. 학생은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가정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의 발생빈도와 심각성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에 따라 휴대전화 규정을 개정할 수 있고, 관련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따른다.
7. 교내 스마트기기 등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

제52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피부색,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도록 한다.

② 학교 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며 일반 학생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5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교사 및 다른 학생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54조 【용의복장】

① 두발의 길이, 색깔, 모양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학생은 스스로 두발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② 복장은 자유 복장을 착용하되, 체육시간에는 체육복 또는 활동이 편안한 복장을 입는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할 수 있다.

⑤ 가방은 자유로이 한다.

⑥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용모를 단정히 하고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55조【건강에 관한 보호】

①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보건실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실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56조【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하고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갖는다.

② 학생은 의견 게시판 등을 통해 타인의 권리 및 공공질서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갖는다.

제57조【사생활의 보호】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상담 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학교는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급식지원 사실, 방과 후 수강료나 급식비의 미납 사실 등에 관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당해년도를 제외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학생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④ 학생은 학교로부터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처리 ·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5장 학생자치

제1절 학생자치회의 조직과 운영

제59조【학생자치회의 조직】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생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1-6학년 학생으로 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학생자치회 운영에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학생자치회 운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 지도 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한다.

제2절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제61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① 모든 학생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한다.

② 학생의 자치활동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건전한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교내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⑤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되,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내용 또는 사적 영리 목적이나 특정 정당, 사회단체를 지지하는 등의 내

용을 배포 · 게시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62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규칙 및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학생대표가 포함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학생대표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구성원은 교원 3인, 보호자 2인, 전문가 1인, 학생대표 3인으로 구성하며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 위원은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민주적 절차로 선출하고, 학생대표는 전교 학생자치회에서, 보호자 대표는 학부모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3조【운영 및 의견수렴】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다.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스티커붙이기, 토론회, 가정통신문, 학교신문고, 이알리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간사는 개정된 초안을 학교홈페이지에 20일 동안 입안 예고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제63조【심의 및 결정】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최종 확정된 개정안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및 5일 이내 학교 알리미에 정보공시한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개정안의 수립경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3.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시행 규칙】

① 학생. 보호자. 재직교원 3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1 물품 분리 보관 일지(서식)

OOOO학년도 소지 금지 물품 분리 보관 일지

번호	학년반 번호 학생 이름	물품명	분리 보관 경위	보관 일자 반환 예정일	학교장 보고일 보호자 알림일	반환 여부	반환 확인 서명
예시	*6-1-35* *홍길동*	*고무총*	*안전 및 건강 위해물품*	*2026.09.15.(금) 2교시* *2026.09.18.(월)*	*2026.09.15.(금)* *2026.09.15.(금)*	*O , X*	
1						O , X	
2						O , X	
3						O , X	
4						O , X	
5						O , X	
6						O , X	
7						O , X	
8						O , X	

부록 2 행동 성찰문(서식)

행 동 성 찰 문

20 년 월 일 학년 반 번 성명 :

보호자	※말씀 : 성명 : (서명)	담임 확인

부록 3 물품 폐기 확인서 (서식)

학생명	
학년 / 반	
물품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명 (서명 또는 인)

태을초등학교장 귀하

부록 4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학생명	
학년 / 반	
신청 물품	
사용 신청 일시	년 월 일 시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목적	※ 학생의 휴대전화(이하 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 종류, 구체적인 사용 행위와 목적 구체적으로 기술
증빙 자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받고자 함.

◈ 휴대전화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년 월 일

학생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명 (서명 또는 인)

태을초등학교장 귀하

부록 5 성찰실-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장

<태을초등학교>

날짜	대상 학생(학년,반,이름)	담당자

교시	수업 담당교사	사유	지원 교사	지도 내용
1	장○○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이○○	행동성찰문 작성 및 수학교과서 50-52쪽 문제풀이

특이사항	1. 3-6 김○○.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6-5 장○○.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